

2020년 10월 17일 지방직 7급 문제 및 해설(A책형)

박문각 박제인 변호사

이번에 시험 보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 혹시 원하는 결과 얻지 못하셨더라도
다음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좋은 연습을 했다고 생각하고 계속 정진하셔서
이후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

총평

이번 지방직 7급은 주요판례 위주로 전형적인 내용들이 주로 출제되었다.
최신판례(최근 2, 3년 내의 판례)는 대략 8개 정도 출제되었다.
각론은 약 5문제 정도 출제되었고, 그 외에 총론 문제에 섞여 나온 각론 지문이 2개 정도 있었다.

생소한 지문들이 더러 섞여 있기도 하였으나,
정답 지문이 전형적인 것이어서 답을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다만 한 문제(15번)는 생소한 내용이라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수험가에서 다뤄지지 않던 내용으로서 틀려도 무방한 문제이므로, 이 문제를 틀렸더라도 낙심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한편 최신판례 중에서도 가장 최신인 19년 판례들이 다수 등장했으며
20번문제는 아예 19년 판례에서만 4개 지문이 모두 출제되었다.
(올초 진행한 최판무료특강 프린트로 전부 커버되었다.)

결국 총론, 각론 합격노트와 최신판례 프린트만 충실히 소화해도
95점이 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혹시나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결코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번 시험은 생소한 지문들이 섞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총론, 각론 합격노트와 최신판례 프린트만 충실히 소화해도 고득점이 가능함이 확인되었으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정진하여
다음 시험에서 좋은 결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지에서는 복습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합격노트(20년판)와 최신판례 프린트(올해 초

진행한 최신판례 무료특강에 함께 업로드된 버전을 그대로 원용하면서,¹⁾ 해당면수를 표기해 적중자료를 검하도록 하였다.

*올초 업로드한 최판프린트의 내용은 21년판 합격노트에 압축·반영되어 있는데, 다만 20번문제 1번지문 판례는 21년판 합격노트에 누락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21년판 합격노트에 추가메모 부탁드립니다.

** 한편 11번문제 3번지문과 관련하여 합격노트에 해당 조항을 추가해 주시기 바란다(해당 문제 해설 참조)

=====

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국민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우선한다.

- ②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 ③ 면허세의 근거법령이 제정되어 폐지될 때까지의 4년 동안 과세관청이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 ④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둔 경우,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면 그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중

①X **합격노트 30면**

1) 법률적합성의 우열

- 동위설(이익형량설) : 적법한 후행조치로 달성되는 공익(법률적합성, 제3자 이익)과, 기존 선행조치 존속으로 보호되는 사익(신뢰보호)을 형량

②O **총론 합격노트 134면 6번 판례**

판례
[1]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 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했을 것이므로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 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아님
[2]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를 제출하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하사관 지원의 하자를 이유로 하사관 임용일로부터 33년이 경과한 후에 행정청이 행한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취소처분이 적법 (2001 5286)

③O **총론 합격노트 27면 3번 판례**

- 1) 다만 최판프린트의 내용을 이번에 출간된 21년판 총론 합격노트에 압축·반영하였으므로, 이 해설지에도 19년분 최신판례는 21년판 합격노트의 축약버전을 원용하되, 면수는 최판프린트를 기준으로 하였다.

판례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4년 동안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
다면 비과세관행 인정(80 6)

○ 합격노트 138면 2번 판례

판례

확약 또는 공적 의사표명을 했다라도, 그 자체에서 언제까지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 기간내
신청이 없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 후 사실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러한 확약 또는 공적인 의
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됨(95누10877)

답 ①

2.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룰 수 있다.
- ②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서로 결합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라는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 ③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구역 내 A시의 시장이 인사교류로서 소속 지방공무원인 에게 B시 지방공무원으로 전출을 명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④ 물품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써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중

①O 총론 합격노트 129면

1)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 : 승계O /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 : 승계X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독립하여 별개라도 후행처분 무효

2) 예외(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가 발생함에도 승계 인정)

■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 친일행위자결정과 독립유공자배제결정

②X 총론 합격노트 130면 5번판례

판례

· 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한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음** (2016 49938)

○ **합격노트 122면 6번 판례**

판례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관할구역 내 시장의 인사교류에 관한 처분은 **당연무효** (2004두10968)

④○ **총론 합격노트 116면 2번 판례**

판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79다262)

답②

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처분적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지방의회이다.
- ②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 ③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당해 법규명령의 제정 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④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

①X **총론 합격노트 302면**

조례

- 조례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없어 취소소송 대상X / 예외 : 조례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취소소송 대상(처분적 조례)
- 이 경우 피고적격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의 공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
- 단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는 공포권자가 교육감이므로 교육감이 피고

②○ **총론 합격노트 79면 2번 판례**

판례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다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없음(2010 72076)

X **합격노트 69면**

근거

- 개별적, 구체적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위임명령은 무효(단, 행정부 내부에서 행정규칙으로서의 효력O)
- 위임명령에서 상위법령의 구체적 조항까지 명시해야 하는 것X
-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 위임명령도 사후에 법령개정으로 위임근거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
- 위임의 근거가 있어 유효인 위임명령도 사후에 법령개정으로 위임근거 없게되면 그때부터 무효
- 따라서 어떤 법령의 위임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해야 □

④X **총론 합격노트 311면 26번 판례**

판례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그 자체로
구체적 권리의무를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처분 아님(2005투15168)

답②

4.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②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③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 ④ A광역시립합창단원으로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자들의 재위촉 신청에 대하여 A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이 실기와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합격 처분에 해당한다.

중

⑩ **최판 프린트 7면**

판례

- [1]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약정의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 고찰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내용을 인정해야
- [2] 甲지자체가 乙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협약을 체결 ⇨ 협약에 근거해 지급된 금액 중 미집행 금액을 회수하기로 하고 乙회사에 이를 납부하라고 통보 ⇨ 乙회사 등이 이를 납부하고 회수통보 무효확인소송 제기한 사안: 위 협약은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체결한 사법상 계약 (甲지자체가 사인인 乙 등에 시설운영을 위탁하고 운영비용을 지급하는 용역계약) ⇨ 위 협약에 따르면 甲지자체는 미집행액을 회수할 계약상 권리X, 인건비 등 일부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乙 등이 협약상 의무를 불이행X ⇨ 甲지자체가 미집행액 회수를 위해 乙회사에게서 지급받은 돈은 부당이득(2018 60588)

X 합격노트 309면 27번 판례

판례

- 선행처분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도로구역결정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음(2007두13159).
-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과 도로구역결정처분이 각각 처분임을 전제로 한 판례
-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자에 관한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정행위는 처분이다(O).

③X 총론 합격노트 141면 비교 2번 판례

판례

- [1] 한국연구재단이 갑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을에 대한 대학자체 징계 요구를 통보한 사안에서, 한국연구재단의 대학 자체징계 요구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는 권유 또는 사실상 통지로서 을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님
- [2] 한국연구재단이 갑 대학교 총장에게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을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3년간 참여제한을 명하는 통보를 하자 을이 통보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을은 위 사업에 관한 협약의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들 법률상 이익이 있음[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협약 해지 통보는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공법상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연구개발비 회수 및 관련자에 대한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2012두28704).
-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갑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을에 대한 대학 자체징계를 요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O)(17지9). /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및 관련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내용으로 하여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협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하였다면, 그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O)(17번시)

④X 총론 합격노트 349면 세 번째 1번 판례

판례

- [1] 광주광역시립합창단원 위촉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 ⇨ 재위촉하지 않은 것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불합격처분이 아님
- [2]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루는 당사자소송은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짐(2001두7794)

①

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과세관청은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처분에 취소원인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긴 경우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ㄷ.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도, 그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ㄹ.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지만,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중

㉠ X **합격노트 135면 12번 판례**

판례

취소를 다시 취소해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상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함**(94 7027)

㉡ O **총론 합격노트 136면 5번 판례**

판례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 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철회·변경 권한을 처분청에게 부여하는 것 일 뿐 상대방에게 철회·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이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없이 한 토지형질변경행위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님(96 6219)

○ 합격노트 136면 9번 판례

판례

영유아보육법상 평가인증 취소는 평가인증 당시 존재했던 하자가 아니라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평가인증의 효력을 소멸시킴 ⇨ '철회'에 해당 ⇨ 평가인증 철회처분을 하면서 평가인증 효력을 과거로 소급 상실시키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와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2015투58195)

㉠ X 총론 합격노트 163면 8번 판례

판례

면허취소처분에는 근거법령이나 취소권유보의 부관을 명시해야 함 / 어떤 위반사실에 대해 처분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았거나 그 후 알게 되었더라도 치유 안됨

주류도매업자에 대한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통지에 "상기 주류도매장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 하여 주세법 제11조 및 국세법사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거 지정조건위반으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 어떤 거래행위로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90누1786)

답③

6.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②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 ③ 사립대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될 경우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한정적·국부적·일시적임을 고려한다면 사립대학교 총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④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그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중

①O ④O 총론 합격노트 171면 4번 판례

판례

- [1] 청구취지 변경이 없더라도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 가능 /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대상인 부분과 공개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
- [2]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은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그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했으나 후에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음
- [3] 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과 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이 폐지되었더라도 곧바로 교도소장이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을 보관·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 못함(2003 12707)

○ 합격노트 166면

- 헌법상 근거는 '알 권리' /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직접 보장되므로, 구체적 법률이 없더라도 정보공개청구권 행사 가능 / 알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정보 접근에 있어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과 청구권적 성격(국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을 모두 가짐

③X 총론 합격노트 172면 위쪽 1번 판례

판례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위임범위 벗어난 것X, 사립대학교가 국비지원을 받는 범위에서만 공공기관 성격 갖는 것X
- [2]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 없음 ⇒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정보공개청구가 신의칙 위반X, 권리남용X(2004두2783) 사립대 총장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

답③

7.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 ㄴ. 소송형태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는 소송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민사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 ㄹ. 「석탄산업법」과 관련하여 피재근로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한 재해위로금 지급거부의 의사표시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가, 나
- ② 가, 르
- ③ 나, 디
- ④ 디, 르

중

㉠O **합격노트 352면 7번 판례**

판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당사자소송에서 청구 인용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 가능(99 3416)

㉡X **총론 합격노트 348면**

- 당사자소송 : 형식적으로는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이나,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등을 다투는 소송 / 형식적 당사자소송도 당사자소송 **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증감소송

㉢X **총론 합격노트 350면 3번 판례**

판례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

[2]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총회결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무효확인을 구해야 / 별도로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 따로 떼어 효력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는 불허**(2007다2428)

㉣O **총론 합격노트 352면 3번 판례**

판례

[1] 석탄산업법상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해 지급하는 위로금이고, 재해위로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당사자소송에 의함

[2]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규정이 정하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당연발생하므로 사업단이 재해위로금 지급거부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이는 처분이 아니라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항고소송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98두12598).

답②

8.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 ㄴ.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
- ㄷ.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
- ㄹ.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 ㅁ.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처분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ㄹ, ㅁ
- ④ ㄷ, ㄹ, ㅁ

중

㉠X **합격노트 155면**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仲裁)·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O **총론 합격노트 163면 6번 판례**

판례

지방병무청장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나,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 부여’ 절차를 거쳐야(2002 554).

㉢X **총론 합격노트 163면 5번 판례**

판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2012두26180).

직위해제도 국가공무원법상 절차를 거치므로 행정절차법 적용 안 됨

㉣X **총론 합격노트 155면**

행정절차법 제3조 【적용 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O **총론 합격노트 164면 9번 판례**

판례

해임처분 과정에서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받거나 의견제출기회를 받지 못했고 해임처분 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해임사유를 제시받지 못했다면 해임처분은 취소사유(당연무효X)(2011 5001)

②

9.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의 대상이 되는 직무상 비밀은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을 의미한다.
- ② 공무원의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의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③ 다수의 공무원이 일반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연장 거부결정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한 행위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것이 위헌·위법인 지시와 명령을 시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을 뿐, 군 내부의 상명하복관계를 파괴하고 명령불복종 수단으로서 재판청구권의 외형만을 빌리거나 그 밖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다면, 군인의 복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각론
중

①X **합격노트 135면**

-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 60조).
- 여기서 비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비밀을 포함한다. (㉠)
-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 따라서 행정기관이 훈령, 직무명령 등에서 비밀로 분류했다라도 실질적으로 비밀이 아니라면, 누설했다라도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②O **각론 합격노트 140면 1번 판례**

판례

[1] 공무원이 그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가 있기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2] 전국기관차협의회의 투쟁활동에 동조하여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적극 가담하거나 철도운행을 방해한 철도청 소속 공무원을 징계파면한 것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③O **각론 합격노트 142면 아래쪽 5번 판례**

판례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된다.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에 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① 여럿이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② 여럿이 단체를 결성하여 그 단체 명의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③ 실제 여럿이 모이는 형태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표문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여럿이 가담한 행위임을 표명하는 경우

④ 일제 휴가나 집단적인 조퇴, 초과근무 거부 등과 같이 정부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집단적 태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속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행위의 집단성이 인정되어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① 원고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반계약직공무원인 소외 1에 대한 계약연장 거부결정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하였고, ② 원고들은 ○○○뉴스 등에 위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난하는 글을 릴레이로 기고하였으며, ③ 원고들은 ○○○뉴스 등에 기고된 글을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릴레이로 올렸고, ④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11, 원고 7, 원고 9, 원고 4(이하 ‘원고 1 등 7명’이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1층 로비 및 청사 앞 인도 상에 위 피켓을 전시한 사안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릴레이 언론기고, 릴레이 내부 전산망 게시는 모두 후행자가 선행자에 동조하여 동일한 형태의 행위를 각각 한 것에 불과하고, 여럿이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여럿이 단체를 결성하여 그 단체 명의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여럿이 가담한 행위임을 표명하는 경우 또는 정부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집단적 태업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행위의 집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 1 등 7명의 피켓 전시는 위 원고들이 1인 시위에 사용하였던 피켓을 모아서 함께 전시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의 집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이 사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소속 일반계약직공무원인 소외 1에 대하여 계약연장 거부결정을 한 것에 항의하려는 데 그 동기나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행한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아니다.

더구나 원고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하였고, 언론기고가 일과시간 중에 행하여졌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으며, 그 밖에 기록상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자신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이 사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사상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행정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행정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에게는 그 내용의 진위나 당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행정정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그 발표 내용 중에 진위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그 표현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국민들로 하여금 공무원 본인은 물론 행정조직 전체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발표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들 전체의 공정성, 청렴성 등을 의심케 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합격노트 138면 1번 판례

판례

[1] 상명하복에 의한 지휘통솔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인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 구 군인복무규율 제23조 제1항은 그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군인이 일반적인 복종의무가 있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재판청구권이 군인의 복종의무와 의견상 충돌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지시나 명령 그 자체를 따르지 않는 행위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은 준수하면서도 그것이 위법·위헌이라는 이유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법적 판단을 청구하는 것 자체로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직접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으며, 재판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법·위헌 여부가 판가름 나므로 재판청구권 행사가 곧바로 군에 대한 심각한 위해나 혼란을 야기한다고 상정하기도 어렵다.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준수하는 이상 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종래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행위를 무조건 하극상이나 항명으로 여겨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태도 역시 모든 국가권력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허용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마땅히 배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것이 위법·위헌인 지시와 명령을 시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을 뿐, 군 내부의 상명하복관계를 파괴하고 명령불복종 수단으로서 재판청구권의 외형만을 빌리거나 그 밖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다면, 정당한 기본권의 행사이므로 군인의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구 군인사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군인복무규율 제24조와 제25조는 **건의와 고충심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은 군에 유익하거나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부하는 지휘계통에 따라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구 군인복무규율 제24조 제1항),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 건의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구 군인복무규율 제25조 제1항)는 내용이므로, 이를 **군인에게 건의나 고충심사를 청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 나아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건의 제도의 취지는 위법 또는 오류의 의심이 있는 명령을 받은 부하가 명령 이행 전에 상관에게 명령권자의 과오나 오류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령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일 뿐 그것이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 내 사전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3] 구 군인복무규율 제13조 제1항은 “군인은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군인으로서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본분에 배치되는 등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를 말한다.

법령에 군인의 기본권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행위가 군인으로서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본분에 배치되는 등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부인하고 이를 규범위반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군인으로서 허용된 권리행사를 함부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①

10.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강등
- ㄴ. 경고
- ㄷ. 견책
- ㄹ. 직권면직
- ㅁ. 불문경고
- ㅂ. 직위해제
- ㅅ. 자격정지

- ① ㄱ, ㄷ
- ② ㄱ, ㅅ
- ③ ㄴ, ㄹ, ㅂ
- ④ ㄷ, ㅁ, ㅂ

각론
중

합격노트 154면

- 징계는 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 ① 파면 :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이다. /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 퇴직급여,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 ② 해임 :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이다. /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 퇴직급여, 퇴직수당이 감액되지 않는다. 단,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의 경우는 감액된다.
- ③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깎는 징계처분이다. /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한다.
- ④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징계처분이다. / 그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한다.
- ⑤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 3분의 1을 감한다.
- ⑥ 견책 :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징계처분이다.
 -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내지 승급할 수 없다.
 - ❏ 비교 경고 : 징계처분이 아니다. / 서면경고의 처분성은 부정되나, 행정규칙인 징계양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는 표창 제한 등의 효과가 있어 처분성이 인정된다. ❏

답 ①

11.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심판법]은 당사자심판을 규정하여 당사자소송과 연동시키고 있다.
- ② 피청구인의 경정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언제나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 ③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완성된

-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중

①X **합격노트 274면**

- 행정심판 유형 :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당사자심판은 규정 X)

②X **총론 합격노트 275면**

- 피청구인 결정 :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또는 권한을 다른 행정청이 승계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결정할 수 있음

③X **총론 합격노트 274면에 제2항 및 제3항 추가하자**

행정심판법 제43조의2(조정) ①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된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조정의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O **총론 합격노트 282면 (5)**

- 법령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해야

답④

12. 행정상 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할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한다.
- ②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에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다.
- ③ 구「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가산세는 형벌이 아니므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능력·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과징할 수 있다.
- ④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중

○ **합격노트 50면 위쪽 판례**

<p>판례</p> <p>[1] 제도는 주민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무회계에 관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호 등에 따라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나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의 가치를 유지·보전 또는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를 말하고, 그 밖에 재무회계와 관련이 없는 행위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또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p> <p>[2] 이행강제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구성하는 재원 중 하나로서 '지방세의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의 효율적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는 등 그 부과·징수를 재무회계 관점에서도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한다.</p> <p>[3]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호의 주민소송 요건인 위법하게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한 전제로서, 관련 법령상의 요건이 갖추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등의 공금에 대한 부과·징수가 가능하여야 한다(2015. 9. 10. 선고 2013두16746 판결)</p>
--

②○ **총론 합격노트 224면 3번 판례**

<p>판례</p> <p>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의 2%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 적법절차,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p> <p>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 제재금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된 것이고, '처벌'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이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어도 이중처벌금지 위반 아님(2001헌가25)</p>

③○ **총론 합격노트 225면**

- : 세법상 신고의무 등 이행확보를 위해, 본래의 세금과 별개로 부과되는 세금
- 세금이지 벌이 아니므로, 형사벌, 행정벌과 병과가능
- 소득세법상 신고기간 내 미신고, 과소신고
- 가산세부과처분은 처분(항고소송 대상)
- 고의, 과실 없어도 부과 / 단,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 불가
- 그러나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 /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에 따라 의무를 불이행했다라도, 관계법령에 위반됨이 명백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가산금, 증가산금은 법률에 따라 당연 발생하는 지연이자로서, 정당한 사유를 불문하고 발생
- **침익적 작용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함**

<p>판례</p> <p>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음 / 다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 불가(2001두403)</p>

④X **총론 합격노트 209면 5번 판례**

판례

의한 영업주 처벌 선임감독상 과실로 인한 처벌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음 (2005 7673)

④

13. 경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서장은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에게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경찰서장은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경찰서장이 주차위반 차를 이동하거나 보관한 경우에 이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 징수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되, 손실보상의 청구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각론

중

⑩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 3.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 ⑤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 ⑥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 ⑦ 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X **합격노트 181면**

제11조의2(손실보상)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생명·신체 또는 재산상(19. 6. 25. 시행)]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생명·신체 또는 재산상(19. 6. 25. 시행)]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생명·신체 또는 재산상(19. 6. 25. 시행)]의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답④

14.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주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주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②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국민이 법령에 정하여진 수질기준에 미달한 상수원수로 생산된 수돗물을 마시으로써 건강상의 위해 발생에 대한 염려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④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 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

①X **총론 합격노트 237면 2번 판례**

판례

[1]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기관력에 의해 그 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 못함** / 담당공무원이 보통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해 그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

[2] 공인회계사 1차시험 출제위원의 **출제 및 정답결정 오류**로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경우라도 시험관련 공무원과 시험위원들에게 직무집행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과실은 없음**(2001 65236)

②X **총론 합격노트 248면 2번 판례**

판례

기관위임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 속하는 지자체의 산하 행정기관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므로 **사무귀속주체가 달라지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그 관리권한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의 배상책임은 지방경찰청장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권한을 위임한 지자체장이 소속된 지자체가 부담하나,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국가배상법 제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99 11120)

○ **합격노트 241면 5번 판례**

판례

국가에게 상수원수 수질 유지의무를 부과한 법령은 국민일반의 건강을 보호해 공공일반의 전체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국민 **개개인의 안전·이익을 직접 보호하는 것이 아님** / 상수원 수질기준 미달로 건강상 위해에 대한 염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책임 없음** / 3급 이하 하천수를 취수해 고도의 정수처리가 아닌 일반 정수처리를 했어도,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이상, 불법행위 아님(99다36280)

④X **총론 합격노트 245면 1번 판례**

판례

- [1]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이고 국가·지자체가 소유권, 임차권 등 권한에 기해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2] 국가배상법 제5조의 '설치상 하자'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 [3] 사고 당시 설치하고 있던 옹벽은 완성되지 않아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이 아님(98다17381)

답③

15.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 ②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에는 그 당일에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다.
- ③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각론

중

①0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신청을 한 날

X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③0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④0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답②

16. 자영업에 종사하는 甲은 일정요건의 자영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령에 근거하여 관할 행정청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1차 거부되었고, 이후 다시 동일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관할 행정청이 다시 2차의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甲은 2차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 ② 甲이 보조금을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신청서를 발송한 때에 신청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甲은 신청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처분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甲의 신청에 형식적 요건의 하자가 있었다면 그 하자의 보완이 가능함에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거부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중

①X **합격노트 306면 3)**

- 후 새로운 신청에 다시 거부 ⇨ 새로운 거부처분 : 반복된 거부는 처분
- 반복된 계고, 반복된 독촉은 처분X

②X **총론 합격노트 157면**

가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O **총론 합격노트 158면**

행정절차법 제17조 【처분의 신청】 ⑧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X **총론 합격노트 64면**

보완요구의무 :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 보완요구 대상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절차적 흠결 / 단 실제적 요건이라도 신청인의 단순 착오, 일시적 사정에 기한 것이면 보완요구가 가능하며, 보완요구 없이 신청을 거부하면 재량권 일탈, 남용

답③

17. 공물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 ②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用に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 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된다.
- ③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학교장이, 학교 밖에 위치한 관사를 용도폐지한 후 국가로 귀속시키라는 지시를 어기고 사친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인에게 매각하였고, 그 후 오랫동안 국가가 이 매각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다면 이 용도폐지 자체는 국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다.

각론
중

①X **합격노트 192면 2번 판례**

판례

[1]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이 된다.**

[2]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도시재개발법[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

[3]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②O **각론 합격노트 192면 1번 판례**

판례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되고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농로나 구거와 같은 이른바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7523 판결)

③O **각론 합격노트 195면 2번 판례**

판례

공유수면은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2013. 6. 13. 선고 2012두2764 판결)

④O **각론 합격노트 194면 1번 판례**

판례

학교 교장이 학교 밖에 위치한 관사를 용도폐지한 후 재무부로 귀속시키라는 국가의 지시를 어기고 사친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이와 같이 교장이 국가의 지시대로 위 부동산을 용도폐지한 다음 비록 재무부에 귀속시키지 않고 바로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용도폐지 자체는 국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그 후 오랫동안 국가가 위 매각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고, 위 부동산이 관사 등 공공의 용도에 전혀 사용된 바가 없다면, 이로써 위 부동산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용폐지 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5924 판결)

①

18.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환지처분이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처분의 대상이 된 특정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환지가 지정되어 있어야만 환지처분에 따른 소유권 상실의 효과가 그 토지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 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는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효력을 가져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ㄷ. 감사원의 변상판정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등은 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ㄹ.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ㄱ	ㄴ	ㄷ	ㄹ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중

㉠ **합격노트 269면 4번 관련 판례**

판례

[1] **농촌근대화촉진법** 2조 등에 의하면, ‘구획정리’는 농지개량사업의 내용 중 하나이고,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사업 공사준공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없이 환지계획을 작성해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농수산부장관이 인가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하고,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해 교부될 환지는 같은 법 제162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본다(위 규정들에 의해 인가·고시된 환지계획을 이하 ‘환지처분’). 이러한 관련규정과 도시개발법 제42조 등에 의하면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계획이 고시된 날의 다음 날 소멸하고, 개인 소유이던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의해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하려면 그 토지가 구획정리사업구역 내 토지로서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단 환지처분이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처분의 대상이 된 특정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환지’가 지정되어 있어야만 환지처분에 따른 소유권 상실 효과가 그 토지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업시행자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유지에 대해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작성해 인가·고시됨으로써 그 토지 소유권을 상실시켰다면, 위법한 환지처분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배상할 손해액은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의 손실보상금인 청산금 상당액이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환지처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X 51면

판례

- [1]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설정·의무부담,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 초래하는 행위 / 행정청 내부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 통지 등 상대방 기타 관계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X
- [2]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자격변동은 법령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별도 처분 없이 사유발생일부터 변동 효력이 당연발생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에게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었다는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그로 인해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적용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업장 직권 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 ⇨ 이는 가입자 자격변동 여부·시기를 확인하는 사실상 통지 ⇨ 권리의무에 직접변동X ⇨ 처분성X(취소소송 각하)(2016두41729)

㉞O 총론 합격노트 318면 라)

사원의 재심의 판정

- 감사원의 원처분인 변상판정이 아닌, 재결인 재심의판정이 항고소송 대상
- 감사원은 합의제 행정청이므로 감사원장이 아니라 감사원이 피고
-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결정이나 기각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고 원처분이 항고소송 대상

㉞O 총론 합격노트 251면 15번 판례

판례

- [1]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공상을 입는 등 이유로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배상청구 불가
- [2] 반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와 같은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보훈보상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보상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유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음(2015두60075)

답②

19.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 ② 무허가증축부분으로 인하여 건물의 미관이 나아지고 증축부분을 철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요건에 해당된다.
 - ③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 ④ 「건축법」에 위반하여 증개축함으로써 철거의무가 있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중

①X **합격노트 197면**

제4조 【대집행의 실행 등】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비상사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②O **총론 합격노트 195면 위쪽 3번 판례**

판례
 무허가증축부분으로 건물의 미관이 나아지고 증축부분 철거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철거대집행계고를 할 요건에 해당(91 4140)

③O **총론 합격노트 130면 4번 판례**

판례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이 위법해도, 후속절차의 위법을 계고의 부적법사유로 삼지 못함**(96능15428)

④O **총론 합격노트 193면**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답①

20.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 부가가치세법상 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그 부과척기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 ② 국세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한 것이다.
- ③ 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이나 법리를 오해하여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해당 규정의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 유지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중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

①O 27~28면

판례
 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부과제척기간은 5년(2016두62726)

②O 최판프린트 53면

판례
 총당은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의 존부, 범위에 구체적·직접적 영향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 민법상 상계와 유사(국가의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 ⇒ 소멸대상 조세채권이 부존재, 당연무효, 취소되는 경우 총당 효력X ⇒ 납세의무자는 언제든지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청구O(2016 239888)

③X 최판프린트 46~47면

판례
 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손실보상대상 아니라고 잘못 재결 ⇒ 피보상자는 토지수용위를 상대로 재결 취소소송 할 것X,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 해야(2018두227)

④O 최판프린트 18면

판례
 법원이 법률 하위의 법규명령, 규칙, 조례, 행정규칙 등의 위헌·위법을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여야 ⇒ '재판의 전제'란 ①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고 ②특정조항이 해당 재판에 적용되며 ③그 조항이 위헌·위법인 지에 따라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 ⇒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해당규정의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일부를 무효로 하면 나머지가 유지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규정 중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원칙)(2017두33985)

답③